

『2017 청년고용 촉진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7. 3. 15.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① 사업목적

- 지역의 청년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선정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대와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②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비 : 20억원
- 사업량 : 65개 기업 정도

③ 모집대상 및 지원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②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인원)을 유지하면서 2017년도 청년 고용 실적이 5명 이상인 기업

※ 청년 기준 : 만 15 ~ 39세 (단, 외국인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

※ 청년채용 인원별 지원기준

- 5인이상 ~ 9인이하 : 20백만원
- 10인이상 ~ 14인이하 : 30백만원
- 15인이상 ~ 19인이하 : 40백만원
- 20인이상 ~ : 50백만원

- ③ 일반적인 기업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보건·의료 서비스업, 지역특화산업분야 등

《선정(신청) 제외 기업》

- 2016년도 『청년고용 리딩기업 지원사업』 지원금 수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근무환경 열악 등 심의위원 다수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4 선정방법

- 선정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후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 ※ (최종선정기업 대상) 사업계획서 및 원가계산서 등 제출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

5 선정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관련법
재 정 적 인센티브 (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실, 기숙사, 목욕시설, 화장실,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사내교육시설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에어컨, 헬스기구, 기숙사·휴게실 가구 등 근로환경개선 자본재 구입 지원 • 작업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공간 (바닥, 천정, 벽면, 창호),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작업환경개선 자본재 구입 지원 <p>※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 (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 제 5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⑥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3. 15. ~ 사업 지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혁신팀
 - 주소 : 우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1층(임수동)
 -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 054-716-0095
- 신청서류 : 청년고용 촉진기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붙임】** 1부
 - ※ 신청서식 : 경북경제진흥원(www.gepa.kr) 홈페이지 참조 및 다운로드

⑦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 **않음**
-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혁신팀 (☎ 054-716-0095)

붙임

청년고용촉진기업 지원 신청서

기업체명		한글 :	영문 :	
대표자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E-mail 주소		
담당부서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기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연락처		주 생산품		
소재지	본사	(우편번호:)	전화	
	공장	(우편번호:)	FAX	
			전화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분		기업 현황 정보		
해당년도		2015년		2016년
평균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자산총액		(백만원)	(백만원)	
총 근로자 수		2017년 청년(만15-39세) 채용 실적 인원		
2016년 12월말	2017년 신청일 현재			
명	명	명		
		정규직 : 명		
		비정규직 : 명		
		사무 : 명, 생산 : 명		
		연구 : 명, 기타 : 명		
		채용자 월평균 임금 : 천원		
※ 고용현황은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작성할 것				
본 기업은 위와 같이 2017년도 청년고용촉진기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서류 1. 신청기업 확인서 1부 (별첨) 2.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2016년 12월말 기준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5. 최근 2년간 재무제표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신청기업 확인서>

구 분	해당여부 (O, X)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본 기업은 위와 같이 신청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도록 함)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